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18 - 26 - 348호

안 건 명 개인정보 유출사업자 법규 위반사항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이사

의 결 일 2018. 5. 30.

주 문

1.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 위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1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 유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제조·판매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의 매출액 현황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평 균
매출액 (단위 : 백만원) (관련매출액)				

※ 자료 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I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 성명, 이동전화번호 등 17건의 고객 정보가 노출되었다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노출신고(2017. 6. 23.)가 개인정보보호 포털



(i-privacy.kr, KISA)에 접수됨에 따라, 피심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현장조사(2017. 10. 20.)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2017. 10. 20. 기준으로 576,476건의 회원정보와 매장 등의 고객정보 1,807,859 등 총 2,384,335건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 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 >

구 분	항 목	수집일	건수
홈페이지 회원정보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보유포인트	'90. 10. 10 ~	576,476건
고객정보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90. 10. 10 ~	1,807,859건
계			2,384,335건

나. 개인정보 노출규모 및 경로

(1) 개인정보 노출규모

피심인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 17건이 2017. 6. 7. 이전에 노출되었다.

< 의 노출·정보 현황 >

구 분	노 출 항 목	건 수	중복제거
회원정보	회원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보유포인트	17건	17명



(2) 노출 경로

피심인은 직영몰()에서 2017. 6. 5.~6. 7. 16:30 기간 동안 “친구추천을 통한 회원가입 시 포인트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이벤트 참여 이후 인터넷 쇼핑몰()에서 기프트콘을 신청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 이벤트 내용 : A가 신규 회원 아이디를 추천인으로 입력하면 최대 포인트 10,000점을 지급하고 지급된 포인트로 쇼핑몰()에서 기프트콘 신청

이 과정에서 피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다수의 기프트콘 신청으로 트래픽이 급증하여 인증시스템(SSO(single sign-on))의 로그인 세션 오류가 발생, 2017. 6. 7. 15:00~16:30 약 2시간(추정)동안 타인이 작성한 기프트콘 신청페이지가 노출되어 최소 17건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되었다.

(3) 노출 신고

피심인은 자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2017. 6. 7. 온라인 고객센터 1:1 문의 게시판에 타인의 정보가 노출된다는 민원을 접수함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인지하였고, 자체 원인규명을 통해 고객정보의 일부가 노출된 것으로 2017. 6. 14. 최종 확인하였다.

피심인은 고객센터에 민원이 접수되어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17명에게 2017. 6. 29.부터 7. 7.까지 유선전화와 이메일로 노출사실을 통지하였다.

개인정보노출 대상자 17명 정보 목록(17명)

순번	이름	ID	1차 6/29	2차 6/30	3차 7/3	4차 7/7
1	김민영	havas11	완료			
2	김정민	np1650	완료			
3	서정자	syj92	부재	부재	부재	부재
4	김포준	antang9601	부재	완료		
5	배수진	ssj100	부재	부재	부재	부재
6	홍정재	weston21c	부재	완료		
7	박복남	iam103	부재	부재	부재	부재
8	이승하	mlum386	완료			
9	남재민	nam9805	부재	부재	부재	완료
10	김재익	qkqkqk777	부재	부재	완료	
11	박하영	hnb1004	부재	완료		
12	박성명	hsdud5342	부재	부재	완료	
13	김명호	nmeshv12	부재	부재	완료	
14	황영희	lgv9vh92	완료			
15	이근은	smn224	부재	부재	부재	부재
16	박소영	mmh9080	부재	부재	완료	
17	유하준	catty90	부재	부재	부재	부재

그러나 피심인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안 때(2017. 6. 7.)로부터 16일이 경과한 2017. 6. 23.에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 KISA)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사실 관계

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사실{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을 지연 신고한 행위

피심인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는 것을 민원접수를 통해 2017. 6. 7. 인지하였으나 이용자에게 2017. 6. 29.부터 7. 7.까지 유선전화와 이메일로 노출사실을 통보하였고, 16일이 경과한 2017. 6. 23.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 KISA)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 2. 27.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안) 사전 통지 및 의견 수렴'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 하였으며, 피심인은 2018. 3. 13. 의견을 제출하였다.

III.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 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 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해설서’는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의 ‘지체 없이’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에 별도로 규정된 정의는 없으나, 관련 판례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및 근거가 없는 한 즉시’로 해석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사실{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을 지연 신고한 행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노출 사실을 안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 KISA)에 신고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안 때(2017. 6. 7.)로부터 16일이 지난 후인 2017. 6. 23.에 신고하였고,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17명에게 유선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21일이 지난 후에야 노출사실을 통지(2017. 6. 29. ~ 7. 7.)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 위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제1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9]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이하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 제7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인 1,000만원을 적용한다.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하. 법 제27조의3제1항(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2호의3	1,000	2,000	3,000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 제9조는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가 2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사업 규모, 위반의 동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 제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위반행위는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는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 제8조는 ▲위반행위의 결과가 과실에 의한 경우,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위 두 가지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사업 규모, 위반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 제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까지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위반행위는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는다.

< 과태료 산출내역 >

위반조문	기준금액	가중	감경	최종 과태료
§27의3①	1,000만원	없음	없음	1,000만원
계				1,000만원

다.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V. 결론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시정명령) 및 제76조제1항제2호의3(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위 원 장 이 효 성



부위원장 허 욱



위 원 김 석 진



위 원 표 철 수



위 원 고 삼 석

